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9 - 16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나. 저소득주민 지원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로 구분하여 명시(안 제1조)

다. 보험료의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라.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 금액 기준 변경(안 제3조)

마. 보험료 환수를 위한 체납처분 사항 삭제(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생활보장과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 본문 중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보험료”로, “지역가입자로서 저소득주민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험료 금액이 월 1만원”을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u>국민건강보험료</u>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지원대상) <u>이 조례에 따른</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p> <p>제3조(지원대상) <u>보험료</u>-----</p>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저소득주민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험료 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2. (생략)

제9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107조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

1. 만65세 이상 노인 세대
2. (현행과 같음)

제9조(환수)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삭 제>